



**AgEcon** SEARCH

RESEARCH IN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The World's Largest Open Access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Digital Library*

**This document is discoverable and free to researchers across the globe due to the work of AgEcon Search.**

**Help ensure our sustainability.**

Give to AgEcon Search

AgEcon Search

<http://ageconsearch.umn.edu>

[aesearch@umn.edu](mailto:aesearch@umn.edu)

*Papers downloaded from **AgEcon Search** may be us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and personal study only. No other use, including posting to another Internet site, is permitted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owner (not AgEcon Search), or as allowed under the provisions of Fair Use, U.S. Copyright Act, Title 17 U.S.C.*

*No endorsement of AgEcon Search or its fundraising activities by the author(s) of the following work or their employer(s) is intended or implied.*

# 농촌 주민의 노인 돌봄 제공 의향과 수용의사금액 분석\*

김남훈\*\* 조승연\*\*\* 하혜지\*\*\*\*

### Keywords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 구간 회귀모형(interval regression), 순위 로지스틱 회귀모형(ordered logistic regression), 조건부 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수용의사금액(willingness to accept: WTA)

### Abstract

Community care led by rural residents is emerging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flawed c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rural areas. However, no paper has studied whether rural residents would participate in providing care for the rural elderl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whether rural residents are willing to provide community care to the elderly who need care and evaluate the amount of the willingness to accept it.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empirical analyses by using (ordered) logistic and interval regressions with the survey of 586 farmers living in rural areas. The result shows that 60% of respondents were willing to provide care to the elderly and the amount of the willingness to accept (WTA) for providing care was around 5,000 won. It also shows that residents who had economic difficulties or needed non-agricultural income tended to participate in care. Female and younger residents also expressed a higher amount of WTA because they could work with higher wages in other jobs. For the policy implication,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cooperate with rural communities to support sufficient compensation for part-time care services so that more rural residents can participate in community care.

### 차례

- 1. 서론
- 2. 농촌 노인 돌봄 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 3. 조사 설계 및 분석 결과
- 4. 요약 및 결론

\* 이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모형 개발 및 확산 방안(2020)”의 일부를 논문화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교신저자. e-mail: sycho@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1.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2018년에는 고령화율 14.8%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최근에도 고령화율의 증가는 지속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율이 2020년 11월 기준 16.3%로 2019년 12월 기준 13.7%보다 2.6%p 증가하였다(행정안전부 2019).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기대 수명도 늘어나 60대 이후에도 20년 이상 더 살아야 한다. 남성의 기대 수명은 1970년 58.7세에서 2018년에는 79.7세로 21년 늘었고, 여성도 65.8세에서 85.7세로 약 20년이 증가하였다(통계청 2019). 이에 따라 2032년에는 60세 남성은 27.6년, 여성은 32.4년, 2042년에는 남자는 30.1년, 여자는 34.7년을 더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후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기대 수명 증가만큼 유병 기간도 증가하여 건강 기간이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남성의 건강 기간은 2012년 65.0세에서 2018년 64.0세로, 여성은 2012년 66.5세에서 2018년 64.9세로 각각 감소하였다(통계청 2019). 65세 이상 노인의 약 90%가 1개 이상의 만성 질병을 앓고 있으며, 만성 질병이 2개 이상인 노인도 전체 노인의 70% 이상이다(정경희 외 2017). 노인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34.2%에 이르며, 각종 질환에 취약한 노인도 많다(통계청 2020).

농촌은 도시보다 고령화율이 높다. 농촌의 고령화율은 2020년 11월 기준 24.1%로 초고령사회 판정 기준인 20%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농촌 지역 중 면 지역의 고령화율은 31.3%로 30% 이상이며, 8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도 9.6%로 동 지역의 3.1%보다 3배 이상 높다. 농촌 지역이 많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강원도는 고령화율이 2019년에 이미 20% 이상으로 모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통계청 2020). 따라서 건강 기간 감소와 만성질환 문제 등이 농촌 노인, 특히 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면 지역에는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 노인이 많다. 면 지역 노인 인구는 2020년 11월 기준 146만 명으로 이 중 27.3%인 40만 명에게 돌봄이 필요한데,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받는 중증 돌봄 대상자는 22만 명 수준이다. 나머지 18만 명은 공적 돌봄 판정 기준으로는 정상이지만, 신체 및 인지기능이 경계 상태에 있어 공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다.

문제는 면 지역 돌봄 제공 체계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뿐만 아니라 공적 돌봄 대상 노인에게조차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면 지역에서는 시설과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고 지리적 접근성도 낮아 충분한 돌봄이 제공될 수 없다. 경증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할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하며, 중증의 공적 돌봄 대상 노인에게 필요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sup>1</sup>도 면 지역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서비스를 받고자 읍 또는 도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교통 접근성이 낮아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돌봄을 제공할 인적 자원도 부족하다. 돌봄 인력을 면 지역으로 유치하려면 도시를 능가하는 경제적 유인이 필요하지만, 경제 기반이 취약한 농업·농촌에서 이러한 유인이 제공되기는 어렵다. 교육이나 문화시설 등 제반 환경의 양적·질적 수준이 도시에 비해 낮아 돌봄 인력이 면 지역으로 유입되기도 어렵다. 현 돌봄 인력도 대부분 읍이나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다.

농촌의 열악한 돌봄 제공 체계, 지리적 불리함, 물적·인적 자원 부족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농촌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김남훈 외 2020a, 2020b). 그동안 민간 기관과 공적 돌봄 체계가 해결하지 못한 농촌 돌봄 문제를 두고 주민이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 돌봄은 주민이 직접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구성하고 돌봄 시설을 설치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주민이 참여한 조직이 돌봄을 제공할 만한 역량을 갖추도록 재정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돌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골자다.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주체는 주민이다. 주민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돌봄이 아닌 생활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 역할하는 것이 지역사회 돌봄에 중요하다. 지역사회 돌봄 체계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중증 상태의 노인에게 면 중심지 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주민은 이들에게 생활돌봄과 같은 간단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서비스 부족이나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워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돌봄<sup>2</sup>을 제공할 수 있는 농촌 내 유일한 인적 자원이 주민이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법」에 따라 설립한 기관이다.

2 생활돌봄은 “장보기, 말벗, 이동지원, 세탁, 주택관리, 가전제품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없

생활돌봄 제공 주체로서 주민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는 있다. 면 단위 주민은 일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여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형태의 전업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다. 게다가 노동 투입 시간 및 강도에 비해 낮은 농업 소득을 받으며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주민에게 비공식 노동인 돌봄까지 강요하기는 어렵다. 농촌 사회 내에서 비공식적·비경제적 활동이 많은 농촌 여성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국가의 책임인 돌봄을 주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지역사회 돌봄이 기존 노인 돌봄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유력한 대안이라 전제한다면, 돌봄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적절하고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보통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관련 비공식 노동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제적 보상을 적절히 인정한다는 관점에서 돌봄의 ‘경제 자원화’<sup>3</sup>를 고려해 볼 수 있다(임소영 외 2020: 147). 경제 자원화의 연장선상에서 돌봄의 진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주민이 돌봄이 필요한 이웃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할 의향이 있고 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생활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된다.

문제는 농촌 주민이 이웃 노인을 위한 생활돌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 경제적 보상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사회 기반 돌봄 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연구는 수요 측면에서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돌봄을 제공하는 체계를 연구했을 뿐, 공급 측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체계를 연구하지 않았다. 특히 면 지역과 같이 돌봄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의 돌봄 공급은 중요한 주제임에도 이를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최근 지역사회 돌봄에서 주민 참여가 논의되고 있지만, 주민의 지역사회 돌봄 참여 의향이나 필요한 경제적 보상 정도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부족했다(황영모 2019; 김남훈 2020a). 경제적 보상 정도의 파악도 수요자의 관점에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에 대한 논의일 뿐, 지역사회 주민이 제공하는 돌봄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액을 논의한 연구는 없다(이수형 외 2003; 김현철 외 2005; 김수진 외 2007; 김윤희 외 2010; 임지영 외 2010; 고숙자 외 2018).

이 연구에서는 농촌 주민이 돌봄이 필요한 이웃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공할 의향이 있다면, 주민이 인식하는 수용의사금액(willingness to accept: WTA)을 분석하여 향후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제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농촌 노인 돌봄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를 완화할 대안으로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 농촌, 특히 면 지역 주민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sup>3</sup>는 사회서비스”이다(황영모 2019).

3 임소영 외(2020)의 발제 중 ‘제4장 농촌여성 활동의 경제 자원화 방안 시론’에서 발췌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 돌봄 제공 의향과 수용의사금액을 파악하여 농촌 주민이 돌봄을 제공할 때 필요한 적정한 임금 또는 기회비용 보상금액을 제시하였고, 향후 먼 지역에서 추진하는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에서 농촌 주민의 역할과 주민 주도 돌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2. 농촌 노인 돌봄 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 2.1. 돌봄 인력 부족

농촌에 돌봄 노동 공급이 충분한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돌봄 노동 관련 통계가 농촌을 구분하여 집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자료가 있지만 읍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돌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먼 지역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먼 지역에 위치한 노인 돌봄 시설 현황을 이용하여 돌봄 공급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돌봄 제공 인력 부족의 전반적인 실태를 이해할 수 있다.

우선,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면 농촌 지역에 돌봄 제공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자에게 방문 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담당할 이용자 수가 3명 이상인 경우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각각 전체 이용자의 5.4%와 13.2%로 나타났으나, 농어촌 지역은 26.4%에 달한다(강은나 외 2019). 요양보호사가 이용자를 방문한 횟수가 40회 이상인 경우도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각각 15.6%와 23.4%이지만, 농어촌 지역은 32.6%에 이를 정도로 많다(강은나 외 2019). 요양보호사가 하루 최대 3명 이상의 이용자를 방문한 경우도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각각 5.0%와 10.6%에 불과하지만, 농어촌은 23.3%로 1/4에 가까운 요양보호사가 하루 최대 3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강은나 외 2019).

농촌에서는 돌봄 인력 고용도 어렵다. 장기요양기관이 인력 채용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각각 56.2%와 59.8%이지만, 농어촌은 75.0%에 이를 정도로 인력 문제를 겪고 있다(강은나 외 2019). 농촌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이 신규로 진입하기도 어렵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 한 명이 대상자 한 명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

의 대상자를 돌보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대상자와 대상자 사이 거리가 먼 농촌보다는 도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활지원사 등이 담당하는 생활돌봄 인력 역시 부족하다. 생활지원사는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찾아가서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며, 안전 지원, 사회 참여, 생활 교육,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계획에 따라 제공하거나 자원 연계 업무를 담당한다. 요양보호사와 달리 자격은 없어도 되고 수행하는 업무도 일상생활 지원이나 말벗, 안전 지원이어서 돌봄 난도도 높지 않다. 농촌에서도 농외소득을 위해 생활지원사를 지원하여 일하는 여성 주민이 많다. 그러나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먼 지역보다는 읍이나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이들이 고용한 생활지원사도 도시나 읍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상자와 가까이 거주하지 않아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농촌 지역에서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나 생활환경을 고려한 생활 맞춤형 돌봄의 제공이 어렵다.

## 2.2. 돌봄 시설의 부족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에 따라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농촌에는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하다. 경증 노인에게는 일상생활을 돕는 생활돌봄이 필요하고, 중증 상태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적 돌봄이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노인복지관인데 먼 지역에는 노인복지관이 드물다. <표 1>과 같이 노인복지관은 동 지역에 평균 0.2개소가 있지만, 먼 지역에는 평균 0.01개만 있어 사실상 먼 지역 노인이 이용할 수 없다. 중증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동 지역에는 평균 1.7개소가 있으나, 먼 지역에는 0.5개소만 있다. 장기요양기관도 동 지역에는 11.0개소가 있으나, 먼 지역에는 평균 0.8개소만 있다.

농촌에서 인구가 집중된 읍 지역에는 먼보다 많은 시설이 있다. 그러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먼 지역에서 읍까지 자가용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 먼 지역의 대중교통 수단도 열악하다. <표 2>의 농촌 노선버스 운행 횟수 현황을 살펴보면, 3만 6,000여 개가 넘는 행정리 중에서 노선버스가 하루 3회 이하 운행하거나 아예 운행하지 않는 행정리가 18% 이상이다. 먼 지역에 주소를 둔 택시 수도 2대 이하일 확률이 78.7%로 비용을 부담하고도 택시를 이용하기도 어렵다.

표 1. 읍·면·동 행정구역당 노인 돌봄 시설 수 현황(2019. 12. 기준)

단위: 개소, %

지역 구분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시설	
		(행정구역당)		(행정구역당)		(행정구역당)
도시(동)	305	(0.15)	3,476	(1.67)	22,942	(11.03)
농촌	86	(0.06)	1,347	(0.92)	6,101	(1.61)
읍	69	(0.27)	710	(2.83)	3,409	(13.58)
면	17	(0.01)	637	(0.53)	2,692	(0.76)
전체	391	(0.11)	4,823	(1.36)	29,043	(4.94)

주: 읍·면·동 행정구역당 시설 수를 나타냄.

자료: 행정안전부(2019). 『주민등록인구현황』; 보건복지부(2019a) 『2019 노인복지시설 현황』; 김남훈 외(2020b) 에서 재인용.

표 2. 농촌 노선버스 운행 횟수 현황

단위: 개, 횟수, %

지역	행정리 수	미운행	운행 횟수					
			1~3회	4~6회	7~9회	10~14회	15회 이상	
전국	36,792	2,349	34,443	4,390	9,208	3,907	5,595	11,343
(비율)		(6.4)	(93.6)	(11.9)	(25.0)	(10.6)	(15.2)	(30.8)
읍부	8,598	517	8,181	603	1,573	596	1,034	4,375
(비율)		(5.9)	(94.1)	(6.9)	(18.1)	(6.9)	(11.9)	(50.3)
면부	28,094	1,832	26,262	3,787	7,635	3,311	4,561	6,968
(비율)		(6.5)	(93.5)	(13.5)	(27.2)	(11.8)	(16.2)	(24.8)

자료: 통계청(2015). 『농림어업총조사보고서 지역조사』.

중심지 돌봄 시설로 나갈 수 없는 노인과 중세가 가벼운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경로당<sup>4</sup>을 들 수 있다. 경로당은 2019년 기준 전국에 6만 6,737개소가 있으며, 행정리에도 다수 분포한다(보건복지부 2019a).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등이 노인복지관 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행정리 경로당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 인구가 적어 참여자가 적은 경로당은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9년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의 경우, 보건소, 체육회, 면사무소, 교육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런데 참여자가 15명 이상일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 제

4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을 말한다.



공 비용을 보조한다고 한다. 참여자가 15명 미만인 소규모 경로당에서는 비용 문제 때문에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 2018년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묘량면에 경로당이 24개소가 있는데,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로당은 5곳에 불과하였다.

### 3. 조사 설계 및 분석 결과

#### 3.1. 조사 설계 및 분석 모형

농촌주민의 돌봄 의향과 돌봄 제공에 대한 수용의사금액을 추정하고자 김남훈 외(2020b)에서 실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통신원 5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등록된 통신원 1,0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2020년 9월 18일(금)부터 10월 12일(월)까지 총 58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농촌 지역사회 돌봄 수요와 돌봄 제공 의향, 돌봄 제공 시 원하는 보상금액, 돌봄 제공 가능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응답자 특성과 함께 설문하였다.

종속변수 중 하나는 돌봄 제공 의향이다. 돌봄 제공 의향을 추정하고자 “귀하께서는 이웃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돌봐드릴 의향이 있으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예”라고 응답하면 돌봄 제공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아니오”라고 응답하면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돌봄 제공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보상금액을 추정하고자 조건부 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였다. 조건부 가치평가법은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가상 가격을 설정하고,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응답한 가격을 해당 재화의 가치로 간주하는 방법이다(송혜인 외 2014). 가상의 상황에서 비시장 재화의 효용을 얻기 위해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지불의사금액)이나 효용을 포기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금액(수용의사금액)을 질문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생활돌봄을 제공하면서 포기하는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금액을 질문하여 수용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설문에서 수용의사금액을 선택하도록 할 때 연구진이 고려한 사항은 응답자가 돌봄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농촌 주민이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로서

기관이나 시설을 통해 돌봄을 제공할 때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돌보거나 공동체 유지 활동 등 비공식 노동에 경제적 보상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면 수용의사금액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연구진이 직접 실제 지역사회 돌봄 체계에서 실현 가능한 보상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보상금액의 구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기준이 되는 기회비용 보상금액은 시간당 6,000원으로 정하였다. <표 3>과 같이 현재 생활지원사가 받는 급여를 시간당 보수로 환산하면 8,590원으로 2020년 최저 임금과 동일하다. 생활돌봄의 경우 생활지원사가 제공하는 돌봄보다는 난도가 낮고, 주민이 전일제가 아닌 시간 단위로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자활근로금액과 유사한 6,000원을 기준 금액으로 제시하였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응답자가 수용의사금액의 범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3. 2020년 최저 임금 및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

일자리 종류	시간당 임금	하루 임금	
		하루 3시간	하루 5시간
최저 임금	8,590원	25,770원	42,950원
요양보호사	10,800원	32,400원	54,000원
생활지원사	8,590원	25,770원	42,950원
노인 일자리(사회서비스형)	9,900원	29,700원	49,500원
노인 일자리(공공형)	9,000원	27,000원	45,000원
자활 근로(사회서비스형)	6,140원	18,420원	30,700원
자활 근로(복지, 자활 도우미 인턴)	7,013원	21,039원	35,065원

자료: 최저임금위원회(2020). 『최저임금현황』;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2019b).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9c).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보건복지부(2019d). 『2020 자활사업안내』.

<그림 1>은 설문에서 제시된 돌봄 제공에 따른 수용의사금액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돌봄이 필요한 이웃 어르신에게 돌봄의 대가로 활동비를 제공한다는 가상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사전적으로 <표 3>을 제시하여 수용의사금액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첫 번째 질문에 초기 금액을 6,000원으로 설정하였다. 초기 제시 금액에 따른 응답에 따라 두 번째 질문에서 6,000원을 수용했다면 6,000원의 절반인 3,000원을, 거절했다면 생활지원사 시간당 보수와 유사한 9,000원을 반복 제시하여 수용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응답자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각각 “예”라고 응답하면 수용의사금액은 3,000원 이하, “예”와 “아니오”라고 응답하면 3,000원 초과 6,000원 이상, “아니

오”와 “예”라고 응답하면 6,000원 초과 9,000원 이상, “아니오”와 “아니오”라고 응답하면 9,000원 초과라고 추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응답자의 수용의사금액을 6,000원으로 할 때, 이를 수용할지 여부와, 수용의사금액의 각 구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수용의사금액 설문 문항

<p>※ 현재 주민이 이웃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돌봐드리고 수고해주신 대가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p> <p>※ 귀하께서 참여하신다면 이웃 어르신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고 필요하면 일상생활을 도와드립니다.</li> <li>- 마을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li> <li>- 경로당에서 주민 활동 프로그램을 하거나 의사·약사·물리치료가 오면 지원해드립니다.</li> <li>-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청과 담당자와 어르신을 돕는 것과 관련해서 협력합니다.</li> <li>- 기타 농촌 공동체 회복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li> </ul>	
<p>9. 귀하께서 이웃 어르신을 돌봐드리면 시간당 6,000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이웃 어르신을 돌봐드릴 수 있습니까?</p>	
<p>① 예 ↓</p>	<p>② 아니오 ↓</p>
<p>9-1. 귀하께서 이웃 어르신을 돌봐드리면 시간당 3,000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이웃 어르신을 돌봐드릴 수 있습니까?</p>	<p>9-2. 귀하께서 이웃 어르신을 돌봐드리면 시간당 9,000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이웃 어르신을 돌봐드릴 수 있습니까?</p>
<p>① 예                      ② 아니오</p>	<p>① 예                      ② 아니오</p>

돌봄 제공 가능 시간도 설문하여 종속변수로 이용하였다. 하루에 몇 시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 추정하고자 “귀하께서는 하루에 몇 시간을 이웃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응답은 객관식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단위로 5시간까지, 그리고 5시간 초과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상 등 네 단계의 순위 변수로 결과를 재분류하여 종속변수로 이용하였다.

설명변수로는 나이, 성별(남성과 여성), 교육 수준(고졸 이하와 초대졸 이상), 거주지역(읍·면 지역) 등의 정보를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경제력 기반은 농지 면적(m<sup>2</sup>), 영농 형태(겸업농과 전업농), 경제적 어려움(공과금 등 연체 및 식생활 어려움 경험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응답자의 신체 건강(자립 생활 가능 여부)과 돌봄 가족원 존재 여부도 설명변수로 고려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을 돌봄 참여 의향과 수용의사금액인 6,000원 수용 여부에 따라 나이와 성별, 거주지역(읍·면·동), 교육 수준에 따라 <표 4>에 표시하였다.

표 4. 돌봄 참여 의향 및 6,000원 수용 여부에 따른 개인 특성 통계량

		돌봄 참여 의향 여부		6,000원 수용 여부		전체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	수용함	수용하지 않음	
나이(세)		62.5	62.3	64.2	60.7	62.5
성별(%)	남	82.9	86.4	89.3	75.9	84.3
	여	17.1	13.6	10.7	24.1	15.7
지역 구분(%)	읍부	14.9	14.8	12.1	18.2	15.1
	면부	70.2	65.8	67.2	72.7	68.3
	동부	14.9	19.4	20.7	9.1	16.6
교육 수준(%)	고졸 이하	43.8	44.9	48.0	39.4	44.3
	초대졸 이상	56.2	55.1	52.0	60.6	55.7

주: 나이는 평균, 성별, 지역(읍면동), 교육 수준은 비율로 나타냄. 6,000원 수용 여부는 돌봄에 참여할 의향을 보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이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에 이용한 모형은 총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돌봄 참여 의향과 초기 제시 금액인 6,000원의 수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할 때는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는 오즈비(odds ratio)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수용의사금액 각 구간을 종속변수로 분석하는 경우 구간회귀모형(interval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Cameron & Huppert 1989; Cameron & Trivedi 2010; StataCorp 2015). 세 번째로, 돌봄 제공 가능 시간이 종속변수일 경우 순위로지스틱모형(ordered logistic regression: 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McCullagh 1980; Greene 2008). 앞서 제시한 세 가지 회귀분석 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본 수를 고려하여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 3.2. 분석 결과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간단한 돌봄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운영·관리하는 데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표 5>의 돌봄 의향별 특성에서 보면 이웃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있다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348명으로, 전체 응답자 580명 중 60.0%를 차지하였다. 돌봄을 제공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0.0%인 232명이었다. 제공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 중 이웃을 돌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2.7%인 6명에 불과하다. 대부분 응답자가 시간이 없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돌봐야 할 가족원이 있어서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참여

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상당수의 농업인이 지역사회에 돌봐드려야 할 노인이 있다면 돌봄을 제공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접 돌봄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주민이 직접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설문 대상 농업인의 돌봄 제공 의향별 특성

도움이 필요한 이웃 돌봐드릴 의향 유무							
의향 있음(348명, 60.0%)				의향 없음(232명, 40.0%)			
보상금액	시간당 보상금액	인원	비율	의향이 없는 이유	이유	인원	비율
	3,000원 이하	104	30.4		농사일이 바빠서	149	67.1
	3,000원 초과 6,000원 이하	71	20.8		건강상 이유로	21	9.5
	6,000원 초과 9,000원 이하	151	44.2		필요성 못 느낌	6	2.7
	9,000원 초과	16	4.7		돌봄 가족원 있음	23	10.4
	합계	342	100.0		노후를 즐기고자	9	4.1
제공 시간	시간	인원	비율		기타	14	6.3
	1시간	25	7.2		합계	222	100.0
	2시간	97	27.9				
	3시간	140	40.2				
	4시간	54	15.5				
	5시간	22	6.3				
	5시간 초과	10	2.9				
합계	348	100.0					

주: 돌봄 제공 의향 있음/없음 응답자 수와 보상금액, 제공 시간, 의향이 없는 이유 관련 문항의 응답자 수가 맞지 않는 이유는 의향 있음/없음에는 응답하였으나 다음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자료: 이 연구의 설문조사.

보상금액 결과에 따르면, 돌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95.3%가 9,000원 이하의 대가에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30.4%는 3,000원 이하의 대가를 지급하면 돌봄을 제공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3,000원 초과 6,000원 이하의 대가에는 20.8%, 6,000원 초과 9,000원 이하의 대가에는 가장 많은 44.2%가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응답하였다. 9,000원을 초과하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4.7%다. 돌봄 제공 의향이 있는 농업인의 대부분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보상받더라도 돌봄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6,000원 이하의 대가에도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응답도 50%를 넘었다.

응답자의 40.2%가 하루 약 3시간 이웃에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일주일에 약 15시간, 한 달에 약 60시간에 해당한다. 하루 2시간 가능하다는 응답자는 27.9%, 4시간, 1시간

이 각각 15.5%와 7.2%를 차지하였다.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면 하루 3시간 이하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인데, 농업·농촌의 특성과 주민이 제공하는 돌봄의 특성 때문에 농촌 주민은 농사 등의 주업과 더불어 시간제로 돌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농업인의 돌봄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표 6>에 제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면 지역에 거주하거나 겸업농,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돌봄 가족원이 없는 응답자일수록 돌봄에 참여할 의향이 높다. 면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읍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돌봄에 참여할 확률이 1.414배 높다. 응답자가 전업농일 경우 겸업농인 응답자보다 돌봄이 필요한 이웃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할 확률이 0.679배 더 낮다. 응답자가 전기요금

표 6. 돌봄 참여 및 수용의사금액, 돌봄 제공 가능 시간 회귀분석 결과

관련 변인	돌봄 참여 의향 여부 (N=570)	수용의사금액		돌봄 제공 가능 시간 (N=339)
		6,000원 수용 여부 (N=336)	금액 구간 (N=334)	
개인 특성				
연령(세)	1.015 [0.998, 1.033]	0.961** [0.939, 0.984]	-49.147* [-82.927, -15.367]	1.009 [0.989, 1.028]
여성	1.296 [0.862, 1.948]	2.393** [1.419, 4.035]	1089.26* [325.229, 1853.291]	1.026 [0.659, 1.598]
초대졸 이상	1.116 [0.816, 1.526]	1.413 [0.927, 2.154]	731.712* [81.077, 1382.348]	0.811 [0.557, 1.181]
면 지역 거주	1.414+ [1.04, 1.921]	1.237 [0.817, 1.874]	696.56* [55.362, 1337.758]	1.248 [0.87, 1.79]
경제 기반				
농지 면적(m <sup>2</sup> )	0.981 [0.876, 1.098]	0.853+ [0.74, 0.984]	-217.799+ [-430.411, -5.187]	0.897 [0.789, 1.019]
전업농	0.679* [0.507, 0.911]	0.987 [0.671, 1.452]	-146.932 [-738.785, 444.921]	0.698* [0.496, 0.982]
경제적 어려움	1.758* [1.135, 2.722]	1.057 [0.628, 1.778]	96.475 [-697.542, 890.493]	1.121 [0.718, 1.751]
돌봄 환경				
자립 생활 가능	1.321 [0.89, 1.961]	0.609 [0.349, 1.062]	-697.763 [-1552.629, 157.102]	1.383 [0.85, 2.251]
돌봄 가족원 있음	0.657* [0.488, 0.884]	1.117 [0.745, 1.676]	237.546 [-382.58, 857.671]	0.841 [0.588, 1.203]

주 1) \*\*: p<0.01, \*: p<0.05, +: p<0.1.

2) 돌봄 참여 의향 여부와 수용의사금액 6,000원 수용 여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돌봄 제공 가능 시간은 순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오즈비(odds ratio)로 표시하였다. 수용의사금액 구간은 구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괄호는 90% 신뢰구간 값이다.

이나 냉난방비를 연체하거나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돌봄에 참여할 확률이 1.758배 더 높다. 가구에 수발이 필요한 노인 가족원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돌봄에 참여할 확률이 0.657배 낮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보상금액으로 6,000원 수용 여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표 6>에 제시하였다.<sup>5</sup> 분석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농지 면적이 작을수록 6,000원을 보상금액으로 수용하지 않고 더 많은 보상을 원할 가능성이 크다. 나이가 1세 많을수록 6,000원을 보상금액으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0.961배 더 낮다. 여성 응답자는 남성보다 6,000원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2.393배 더 높다. 농지 면적이 1㎡ 넓을수록 6,000원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0.853배 더 낮다.

구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수용의사금액을 추정하고 수용의사금액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우선 구간 회귀분석을 추정된 응답자의 수용의사금액은 4,986원이다. 첫 번째 제시금액인 6,000원과 비교하여 1,000원 정도 낮은 금액이다. 수용의사금액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면, 6,000원 수용 여부와 유사하게 나이가 적을수록, 여성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면 지역에 거주할수록, 농지 면적이 작을수록 수용의사금액이 높다. 나이가 1세 많을수록 수용의사금액은 49.147원 감소한다. 응답자가 여성인 경우, 남성일 때보다 수용의사금액이 1,089.26원 증가한다. 응답자의 교육 수준이 초대졸 이상인 경우,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수용의사금액이 731.712원, 응답자가 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읍 지역 거주 응답자보다 696.56원 증가한다. 농지 면적이 1㎡ 넓을수록 수용의사금액은 217.799원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제공 가능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순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돌봄 제공 가능 시간에는 전업농 여부만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가 전업농인 경우, 겸업농인 응답자와 비교하여 1시간보다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할 확률이 0.698배 낮았다.

5 6,000원을 수용한 경우를 0, 수용하지 않은 경우를 1로 하여 분석하였다.

## 4. 요약 및 결론

농촌에 지역사회 돌봄이 진행된다면 주민이 주도적으로 돌봄, 특히 생활돌봄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돌봄을 제공할 역량이 있는 주민의 절반 이상이 이웃 노인 돌봄에 참여 의향을 나타내었고, 최소 3시간 정도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한 주민도 대다수였다. 그동안 지역사회 돌봄에 농촌 주민이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돌봄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여성농업인 또는 농촌 여성은 지금도 농작업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이미 많음에도 다시 돌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질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농업인이 지역사회 돌봄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종합하면 합당한 경제적·사회적 보상이 제공된다면 지역사회 돌봄이 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다.

농촌 주민이 지역사회 돌봄 체계에서 돌봄을 제공할 때 필요로 하는 수용의사금액은 시간당 4,986원이며, 이는 연구진이 추정한 지급 가능 금액인 시간당 6,000원보다 1,000원 이상 낮다. 즉, 돌봄을 제공할 의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경제적 보상도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소한의 기회비용만 보상되면 농촌 주민은 기꺼이 돌봄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돌봄을 제공하는 주민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다고 하면 그 비용 부담이 일자리 사업과 비교하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용의사금액이 5,000원 수준이지만 전체 응답자의 48.9%가 돌봄 제공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6,000원 이상을 제시하여 사회가 이를 부담할 수 있을지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6,000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9,000원 이하의 낮은 금액을 수용하였다. 현재 최저 임금, 생활지원사,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적용하는 시간당 임금은 9,000원 안팎이다. 지역사회 돌봄의 노동 강도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면 6,000원 초과 9,000원 이하의 금액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 돌봄 참여 의향과 수용의사금액에 미치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돌봄 참여 의향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업농 여부와 경제적 어려움 여부다. 현재 경제적 문제가 있거나 겸업농으로서 농외소득이 일부 필요한 응답자가 돌봄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일단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면, 수용의사금액에는 더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역사회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이웃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한다는 공동체적 유인과 함께 부족한 농업소득을



보완하는 농외소득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비공식 노동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한 돌봄의 영역에 경제적 보상이 제공될 돌봄 제공 체계라는 점을 주민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수용의사금액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와 성별과 같은 개인 특성과 농지 면적이다. 나이가 적을수록 다른 농외소득 기회가 많고, 여성일수록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같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돌봄 관련 직종이 많으므로 기회비용이 높다. 농촌에서 돌봄 노동의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로 일하고자 하면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서 일할 기회는 많다. 따라서 이들을 생활돌봄 제공 주체로 활용하려면 더 높은 금액의 보상이 필요한데, 높은 보상은 곧 지역사회 돌봄 체계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불의사금액과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의 개념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서 주민이 생활돌봄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인적·물적 자원과 접근성이 부족한 농촌에서 돌봄을 제공하려면,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동체 문화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반 돌봄 제공 체계가 자리 잡을 확률이 높다. 농촌주민이 돌봄을 기획하고 직접 제공함으로써 김용득(2018)에서 제시한 ‘주체로서의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돌봄을 기획하고 직접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지역의 맥락을 고려한 돌봄이 가능하다. 과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획일적으로 수행하던 사업과는 달리, 주민이 참여하는 조직이 돌봄을 기획하고 이를 농촌 공동체가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지역 특성과 공동체의 선호가 반영될 수 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민이 직접 돌봄의 종류와 시설 등을 결정하고 돌봄 제공에 따른 보상금액도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공동체성을 인정하더라도 자발적인 참여만을 기반으로 하는 무보수 노동은 지양해야 한다. 그동안 농촌에서는 지역주민의 희생으로 공동체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어르신에게 공동 급식을 제공하는 전통이 있다. 그러나 공동 급식의 사회적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 또는 관행적인 무보수 노동의 제공에 따라 최근에는 이를 포기하거나 이를 유지하는 데 따른 마을 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역사회 돌봄에서 주민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려면 최소한 시간당 5,000원 선의 임금을 제공하여 기회비용을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이 연구는 농촌 사회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경제적 보상을 수용의사금액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수용의사금액과 빈도 분석을 중심으로 설계된 설문조사의 한계 때문에

돌봄 제공과 관련한 모든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농촌 주민의 돌봄 공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촌 지역 내 돌봄 공급 관련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향후 돌봄이 필요한 농촌 주민의 지불의사금액과 정부나 농촌 공동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보상금액을 분석하여 수용의사금액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 공동체에서 돌봄 노동을 어떻게 경제 자원화하고 공동체가 합의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정책 이외에 농촌 돌봄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정부가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해서 농촌 돌봄 체계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기회비용 보상을 시작으로 어떻게 농촌 지역 돌봄을 회복하고 정상화할지 고민해야 한다. 농촌 돌봄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역할 분담 및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강은나, 이윤경, 임정미, 주보혜, 배혜원. 2019.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고숙자, 정영호, 이재용. 2018.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편익 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35권 제5호. pp. 69-78. <http://doi.org/10.14367/kjhep.2018.35.5.69>
- 김남훈, 하은혜. 2020a.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남훈, 조승연, 하혜지. 2020b.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 및 확산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진, 문옥륜, 안무업, 류시원. 2007. “농어촌지역 만성질환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제32권 제1호. pp. 17-31.
- 김용득. 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회연구』 38(3): 492-520
- 김윤희, 배은영, 신상진, 박신영, 송현진, 박주연, 안정훈. 2010. “건강개선 정도에 따른 지불의사금액 추정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pp. 79-100.
- 김현철, 홍나래, 연병길, 박태규, 정우진, 정진욱. 2005. “장기요양 서비스를 누가, 얼마나, 얼마에 원하고 있는가? 장기요양 서비스의 욕구와 결정요인 및 지불의사금액.” 『보건행정학회지』 제15권 제4호. pp. 136-160.
- 보건복지부. 2019a. 『2019 노인복지시설 현황』.
- \_\_\_\_\_. 2019b.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_\_\_\_\_. 2019c.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 \_\_\_\_\_. 2019d. 『2020 자활사업안내』.
- \_\_\_\_\_. 2020.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송혜인, 배향은, 이용용. 2014. “CVM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INTERNET & SECURITY FOCUS』. 2014년 5월호. pp. 22-45.
- 이수형, 이태진, 양봉민. 200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하여.”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 175-199.
- 임소영, 김정섭, 김남훈, 하인혜, 최유진, 김경란, 이순미, 위라겸. 2020.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방향: 정책 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지영, 송미숙, 한영란, 김은주, 최경원, 성영미. 2010. “일 노인인지강화프로그램에 대한 지불용의 측정.”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4권 제2호. pp. 173-181.
-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오미애, 강은나, 김경래, 황남희, 김세진, 이선희, 이석구, 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저임금위원회. 2020. 『최저임금현황』. <<https://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검색일: 2021. 2. 1.
- 통계청. 2015. 『농림어업총조사보고서 지역조사』.
- 통계청. 2019. 『2018년 생명표』.
-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 행정안전부. 2019. 『주민등록인구현황』.
- 황영모. 2019. 『농촌지역 생활돌봄과 청년 일자리 정책방안』. 전북연구원.
- Cameron, T. A., & D. D. Huppert. 1989. “OLS versus ML estimation of non-market resource values with payment card interval data.”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vol. 17, no. 3, pp. 230-246.

[https://doi.org/10.1016/0095-0696\(89\)90018-1](https://doi.org/10.1016/0095-0696(89)90018-1)

Cameron, A. C., & P. K. Trivedi. 2010. *Microeconometrics using stata* (Vol. 2). College Station, TX: Stata press.

StataCorp. 2015. *Stata User's Guide Release 14*. College Station, TX: Stata press.

Greene, W. 2008. "Econometric Analysis, Sixth Edition."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McCullagh, P. 1980. "Regression models for ordinal data."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Methodological)*, pp. 109-142. <https://doi.org/10.1111/j.2517-6161.1980.tb01109.x>

원고 접수일: 2021년 2월 7일
원고 심사일: 2021년 2월 16일
심사 완료일: 2021년 3월 17일